

규정 코드	A05(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)	최종 제.개정일
규정 명칭	각 위원회 및 국가대표급 선발에 관한 규정	2011. 9 제정 2013. 4. 01 개정 2014. 3. 29 개정 2015. 3. 21 개정 2016. 1. 23 개정 2017. 1. 07 개정 2017. 9. 09 개정 <b>2018. 4. 08 개정</b>

## A05 각 위원회 및 국가대표급 선발에 관한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1조 (설치근거)

본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(이하 ‘연맹’이라 한다.) 정관 제7장 제40조에 의거 설치한다.

#### 제2조 (목적)

연맹 정관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 참가 및 국가대표 선수훈련을 위해 구성되는 임원 및 선수를 공정하고, 효율적으로 선발하는 것,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각 부문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3조 (적용범위)

연맹에 등록한 모든 선수, 임원 및 시·도연맹, 업무 종사자에 적용한다.

### 제 2 장 조직 및 운영

#### 제4조 (위원회의 구분)

위원회는 ‘종목부문’, ‘지원부문’, ‘전문부문’으로 구분하며 각 부문에 속하는 위원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.

- 1.종목부문: ‘종목위원회’ 1개의 위원회를 둔다.
- 2.지원부문: ‘지원위원회’와 ‘행정위원회’ 2개의 위원회를 둔다.
- 3.전문부분: ‘경기위원회’, ‘맵핑위원회’, ‘규정위원회’, ‘교육위원회’ 등 4개의 위원회를

둔다.

## 제5조 (위원회의 구성)

각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.

1. 종목위원회: 부회장 1명과 4개 종목이사(Foot-O, MTB-O, Ski-O Trail-O) 등 총 5명으로 구성한다.
2. 지원위원회: 부회장 1명과 IT장비이사, 환경이사, 흥보이사, 의무이사, 학술이사, 안전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.
3. 행정위원회: 부회장 1명과 재무이사, 해외이사, 사무처장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.
4. 경기위원회: 부회장 1명과 4개 종목이사, 심판이사, 지도이사 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.
5. 맵핑위원회: 부회장 1명과 지도이사, 상급지도제작자 9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한다.
6. 규정위원회: 부회장 7명과 4개 종목이사, 지도이사, 심판이사, IT이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한다.
7. 교육위원회: 부회장 1명과 교육이사, 심판이사, 청소년이사 등 총 4명으로 구성한다.

## 제6조(위원회 임원의 선임 및 임기)

1.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부회장으로 자동 선임되며 회장이 임명한다.
2. 각 위원회별로 간사를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별도로 선출할 수 있다.
3. 위원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간사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정한다.

## 제7조(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)

위원회는 이사회에 자문기구로서 그 운영 및 회의는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한다.

## 제8조(위원회의 활동업무)

각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종목위원회

- ① Foot-O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
- ② Trail-O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

③Ski-O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

④MTB-O 관련 기술 및 정보교류

## 2. 지원위원회

①환경관련 활동 및 정보 교류

②IT, 편침시스템, 타이밍시스템 관련 기술교류

③반도핑 활동 및 전파교육 등

④기타 지원부문 활동

## 3. 행정위원회

①체육회관련 대외 업무 지원

②대외협력 관련 업무 지원

③기타 연맹 행정에 관한 정보 교류

## 4. 경기위원회

①국가대표 선발대상자 자격심의

②공인대회 감독관 및 심판 선정 및 추천

③대회규정 검토 및 개정안 이사회 상정

## 5. 맵핑위원회

①지도제작규정 검토 및 개정안 이사회 상정

②공인대회 지도의 심의 및 승인

## 6. 규정위원회

①대회규정, 지도제작규정, 지도자 및 심판 양성규정을 제외한 각종 규정의 제·개정안 검토 및 이사회 상정

②연맹 운영관련 내규 및 지침(Guide) 등의 검토 및 이사회 상정

## 7. 교육위원회

①지도자 및 심판 양성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

②지도자 양성관련 규정의 제·개정안 검토 및 이사회 상정

③각종 스포츠지도사 실기 및 구술검정 관리

### 제 3 장 대표선발 요건 및 유형

#### 제9조 (대표선발 대상자의 자격)

1.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시,도 연맹에 소속된 회원이어야 한다.
2.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주소지 기준 연맹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.
3.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명시된 국가대표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.

#### 제10조 (선발 대상 대회)

1. 각 종목별(Foot O, MTB O, Ski O, Trail O)로 구분하여 선발한다.
2. Foot O 종목은 세계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(WOC), 아시아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(AsOC)를 대상으로 한다.
3. Trail O 종목은 세계트레일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(WTOC)를 대상으로 한다.
4. 일회성으로 추가 파견이 필요한 대회 또는 파견대상 대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발대상 대회를 결정한다.

#### 제11조(선발 계획의 공지)

1.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매년 3월까지 당해 년도 선발규모 및 대상 대회 등 선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이사 명의로 각 시, 도 연맹에 공지한다.
2. 선발전 대상 대회는 그 해에 계획된 개인대회를 기준으로 먼저 공지하고 추후 조정하도록 한다.

### 제 4 장 대표 선발

#### 제12조 (선발 기준)

1. 각 종목별로 3회차 이상 선발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종목 사정에 따라 선발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2. 선발 기준은 대회 성적을 점수화 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순으로 선발한다. 종목별 선발방법 및 점수 계산방법은 제14조에 따른다.
3. 한 사람이 두 개 종목 이상 동시에 대표 선발 자격이 부여될 경우에는 그 중 한 개 종목만 선택하여 대표선수가 될 수 있다.

## 제13조 (선발 인원)

1. 선발 인원은 본 연맹의 사정에 따라 정한다.
2. 국제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.

## 제14조 (종목별 선발 방법)

### 1. Foot O 선발

- ① 해당 연도 전체 선발전 대회 수의 50% 이상 참가한 선수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그 해 전체 선발경기 수의 70%에 해당되는 경기에서 획득한 선발포인트를 합산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. 경기수를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.  
예) 00년도에 선발전 대회가 총 10회가 있고 그 해 A 선수는 총 8회, B 선수는 총 6회, C 선수는 총 4회의 선발전 경기에 출전하였을 경우
  - 선발대상 여부: A, B 선수는 50% 이상 참가하였으므로 선발대상자가 되며 C 선수는 50% 미만이므로 선발대상에서 제외됨
  - 포인트 계산 : A선수는 참가한 8회의 경기 중 성적이 좋은 7개 경기 성적을 적용하고 B선수는 6개의 경기성적 합산하여 적용
- ② 선발 포인트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부여하는 참가포인트와 경기 결과에 따라 계산되는 기술포인트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각각의 포인트 배분은 다음과 같다.
  - 1) 참가포인트: 선발 경기에 출전한 모든 경기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로 실격여부와 관계 없이 200점이 부여된다.
  - 2) 기술포인트: 경기자의 기록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점수로 기본 800점 만점에 대회계수를 곱하여 부여한다.
- ③ 등위별 기술포인트의 계산방법은 1위 선수가 기록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 등위별로 기록한 시간을 나누고 기본 800 포인트와 대회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.  
(아래 계산식 참조)
- ④ 기준이 되는 1위의 기록은 외국인 참가자나 선발 대상자가 아닌 선수를 제외하고 선발 대상자 중 1위를 기준으로 한다.

### 등위별 기술포인트

$$= 1\text{위 선수의 기록(초)} / \text{경기자의 기록(초)} * 800 * \text{대회계수}$$

- ⑤ 대회계수는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한다. 만약 두 개의 조건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

은 할증계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- 한국선수권대회 : 1.1
- 시,도연맹 주최 공인대회 : 1.0
- 지도축척 1:7,500 이하 : 1.05
- 지도축척 1:5,000 이상 : 1.0

⑥ 대회를 운영하는 연맹에 소속된 선수는 선발전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기 참여와 관계없이 선발전 대상 성적에서 제외한다. 단 한국선수권대회는 예외로 한다.

⑦ 선발전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의 처리

-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대회 참가 횟수가 많은 사람, 기술포인트가 높은 사람, 나이가 적은 사람의 순서로 순위를 정한다.

## 2. MTB O 선발

- ① 점수 환산은 Foot O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## 3. Ski O 선발

- ① 점수 환산은 Foot O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## 4. Trail O 선발

- ① 매년 선발전 대회는 경기위원회에서 대상 대회를 지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- ② 선발전은 E 또는 A Class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패럴림픽 클래스와 오픈 클래스를 각각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위원회에서 대상 클래스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시 경기형식별(PreO, TempO)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다.
- ③ 선발전 대상 대회에서 각 경기자가 획득한 포인트 중에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최대 3개 대회까지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그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 한다.
- ④ 등위별 포인트 부여는 PreO와 TempO 동일하게 1위 21점, 2위 이하는 19점부터 1점씩 차감한 기본 포인트를 부여하고 대회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.

$$\text{등위별 포인트} = \text{기본 포인트} \times \text{대회계수}$$

- ⑤ 대회계수는 한국선수권대회는 1.1, 기타 시도연맹 공인대회는 1.0을 적용한다.
- ⑥ PreO와 TempO 통합 선발일 경우에는 각각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

다.

- ⑦ 선발전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선발전 대상 대회의 운영으로 참가한 경우 선발 대회 성적 중 상위 2개 대회의 평균 포인트를 운영 포인트로 부여한다. 단, 선발 전 참가 횟수가 1회 뿐일 경우 운영 포인트는 부여되지 않는다.
- ⑧ 통합선발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PreO 포인트가 높은 순으로 결정한다.

#### **제15조 (선발결과의 공지)**

1. 최종 선발 결과는 경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이사 명의로 각 시, 도 연맹에 공지한다.
2. 경기위원회에서는 선발선수의 대표자격 결격 사유가 있는지, 파견대상 대회에 참가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필요 시 최종 선발 선수를 변경할 수 있다.
3. 최종 선발된 대표선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4. 최종 선발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말까지 공지하여야 한다

#### **제16조 (국가대표팀 임원 선발)**

1. 본 규정에 의한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 대상은 감독 및 코치에 한한다.
2.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, 경기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.
3. 국가대표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.
  - ① 본 연맹 또는 시.도 연맹 임원으로 2급 지도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
  - ② 지도자로서의 코칭 능력과 관리 능력, 어학 능력을 갖추어 대표팀 인솔 및 비상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.
4. 선발 절차는 아래와 같다.
  - ① 해당 경기위원회에서 상기 2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.
  - ②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선발한다.

### **제 5 장 국가대표 선수**

#### **제17조 (대표팀의 조직)**

1. 대표 선수단 임원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단장 1명, 감독 1명, 코치 1명으로 하며 선수

단 규모에 따라 코치의 인원을 조정한다.

2. 2개 종목이상의 통합 선수단이 조직될 경우에는 종목별로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다.

### 제18조(대표선수의 의무)

1. 대표선수 자격 유지 기간은 선발확정 공지 시점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2. 대표선수는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다른 국적의 대표 및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
3. 국가대표선수는 소정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4. 국가대표선수는 국내외 활동에 있어 아래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본 연맹의 정관 및 본 규정에 명시한 사항

②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

③ 대한체육회올림픽위원회의 마케팅규정

④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

5. 국가대표선수는 국내외 활동에 있어 아래의 의무사항을 갖는다.

① 품행을 단정히 하고, 규정과 에티켓을 지켜 타의 모범이 되며, 국가 대표 선수로서 자긍심과 품위를 지킨다.

② 연맹으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반드시 착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.

③ 대한체육회, 본 연맹의 방침 및 국가대표 임원진(감독, 코치)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른다

### 제19조 (지원 범위)

1.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임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다. 단, 연맹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아래 1항, 2항에 대한 지원범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① 국제대회에 공식 파견될 경우 대회 참가비 및 인증료를 지원한다. 단 선수별 참가 가능한 경기 수는 종목 담당이사 또는 선수단 임원에 의해 결정되고 선수 본인 의사에 의해 추가로 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추가 참가비를 선수 본인이 부담한다.

② 국제대회 파견되는 선수단에게는 대표선수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하고 선수의 경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단체복을 지급한다. 단 단체복을 지급 받은 선수 및 임원이 4년 이내 재 선발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.

2. 선수가 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선수 기준으로 지원한다.

3. 일회성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.

## 제20조 (결과 보고)

1. 감독은 대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.
2.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별지서식(제00호)을 이용하여 약식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세부보고서를 제출한다.
3. 대회 세부보고서에는 참가 선수들의 경기결과, 경비지출내역, 문제점 및 대책방안, 대회참가 소감, 대회수집자료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다.
4.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수단은 참석에 응하여야 한다.

## 제21조 (징계 사유)

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.

1.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한 소집 명령에 무단으로 응하지 않은 자.
2. 대표선수로 선발된 후 타 국적, 단체로 무단 참가한 자.
3. 고의적으로 국가 및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
4. 제19조에 명시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자.
5. 기타 징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

## 제22조 (징계 절차)

1. 징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  - ① 주의 – 경미한 도덕적인 위반 행위
  - ② 경고 – 해당 위반 행위가 뚜렷한 경우
  - ③ 자격박탈 – 중대한 과실, 경고 3회에 이른 자. 선수(팀)에서 제외 조치한다
2. 해당 팀 임원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‘징계 위원회’를 열어 처리 한다.
3. 필요하다면 대상자의 소명이나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.
4. 최종 결과는 일자 및 사유, 징계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에게 서면(징계통보서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5. 임원 징계의 경우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상급기관에 하여야 한다.
6. 국가대표 활동 중 불합리한 사유로 사퇴할 경우 연맹에서 지급한 훈련 활동비, 기타 제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### 제23조 (경과조치)

본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‘종목, 부문별 위원회’ 결정에 따른다.

### 제24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다. <2011년 9월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 <2013년 4월 1일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 <2014년 3월 29일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 <2015년 3월 21일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 <2016년 1월 23일>

이 규정은 2017년 1월 7일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

이 규정은 2017년 9월 9일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

이 규정은 2018년 4월 8일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